

SUNSET LANE SCHOOL
SCHOOL SITE COUNCIL BYLAWS
선셋레인 학교위원회 조례

Article I: NAME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선셋레인 학교 위원회가 된다.

Article II: PURPOSE 제 2 조: 목적

1. 학교장, 교사 및 기타 교직원과 함께 학생 성취도를 위한 단일 계획안의 이행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2. 학생 성취도를 위한 단일 계획안을 매년 검토하고 개정하여 그것이 교육 강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하는 요구와 우선 순위를 반영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학교 예산을 감시하고 승인한다.
3. 교육 법규에서 요구하는 다른 조치들을 취한다.
4. 학교 안전 계획, 재난 대비 계획 및/또는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학교 전체 계획을 매년 검토한다.

Article III: MEMBERSHIP 제 3조: 회원

Section 1: Composition 제 1항: 구성

위원회는 학교장, 교직원들이 선출한 교직원 대표, 재학생의 학부모들, 또는 그 부모들이 선출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영어 학습자 (ELL) 학부모의 구성원은 학교에 영어 학습 학생들이 있는 비율과 최소한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

선셋레인 학교 위원회는 (a) 학교장, 학급 교사 및 기타 교직원과 (b)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선택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급 교사들은 대다수의 교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Section 2: Resignations 제 2항: 사직

사직은 의장에게 서면 통지가 있을 경우에만 수락된다.

Section 3: Voting Rights 제 3항: 투표 권리

각 회원은 1 표의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의 표결에 제출된 각 사안에 대해 해당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4: Elections 제 4 항: 선출

각 학년도의 10 월 15 일까지 위원회 멤버 자격을 고려하고자 하는 학부모 및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대표되는 각 단체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 공동체 구성원)에 대하여 늦어도 각 학년도 11 월 1 일까지 선출되어야 한다. 각 그룹은 해당 범주에 속하는 동료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Section 5: Termination of Membership 제 5 항: 위원 자격 종료

위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 자격을 중단하거나 또는 더 이상 자신이 선택한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 자격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Section 6: Vacancy 제 6 항: 공석

위원회의 공석은 동료 선출 또는 동료 선택에 의해 해당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7: Terms of Office 제 7 항: 재직 임기

위원은 2 년 임기로 선출되며, 위원의 반은 짝수 해, 위원의 다른 절반은 홀수 해로 봉사하도록 선출된다. 위원은 임기 종료 시 재선을 위해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임원은 제 7 조 제 1 항에 요약된 바와 같이 매년 선출된다.

Section 8: Non-Discrimination 제 8 항: 차별금지

학교 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방 및 주법의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신체적 장애, 의학적 상황, 결혼 여부,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선출되어야 한다.

Article IV: OFFICERS 제 4 조: 임원

이 위원회의 임원은 의장, 공동 의장, 그리고 기록 서기로 구성된다.

Article V: DUTIES OF OFFICERS 제 5 조: 임원의 의무

Section 1: Chairperson 제 1 항: 의장

의장은 학교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조직, 소집 및 주재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 위원회의 모든 서신, 보고서 및 기타 통보에 서명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학교 위원회가 수시로 규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2: Co-Chairperson 제 2 항: 공동 의장

의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공동 의장이 의장의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된다. 학교장은 공동 의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

Section 3: Recording Secretary 제 3 항: 기록 서기

기록 서기는 모든 회의록을 보관하고 각 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Article VI: DUTIES OF COUNCIL MEMBERS 제 6 조: 위원회 구성원의 의무

모든 위원회 구성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 또는 선출될 때 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락한다.

Article VII: ELECTION OF OFFICERS 제 7 조: 임원 선출

Section 1: Elections 제 1 항: 선출

의장, 공동 의장 및 기록 서기는 학년 첫 회의에서 선출한다.

Section 2: Resignations 제 2 항: 사임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의장, 공동 의장, 또는 기록 서기가 사퇴할 경우, 공석이 채워질 수 있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Article VIII: COMMITTEES 제 8 조: 위원회

의장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Article IX: MEETINGS AND QUORUM 제 9 조: 회의 및 정족수

Section 1: Meetings 제 1 항: 회의

회의는 학년도 당 최소 4 회 이상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학교위원회의 모든 정기 회의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중은 위원회가 관할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위원회에 언급할 수 있다.

Section 2: Notice of Meetings 제 2 항: 회의 공문

정기적인 회의에 대해서는 공문을 해야 한다.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한 회의 공문은 적어도 회의 72 시간 전에 학교 또는 기타 접근 가능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3: Quorum 제 3 항: 정족수

학교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해 각 단체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 요구된다.

Section 4: Governing Rules 제 4 항: 관리 규정

회의는 이들 조례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모든 분쟁은 로버츠 질서 규칙 (Roberts Rules of Order)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Section 5: Agenda Items 제 5 항: 의제 사항

1. 회의에서 고려할 날짜, 시간, 장소 및 의제 사항을 포함하는 각 회의의 안건은 최소한 회의 개최 72 시간 전에 학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제가 게시된 경우 조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한, 게시된 안건에 설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3.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과 간단한 진술은 게시된 안건에 설명될 필요가 없다.
4. 만약 이러한 절차가 위반된 경우, 모든 사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의에서 그 사항을 재고해야 한다.

Article X: SCHOOL SITE COUNCIL RECORDS 제 10 조: 학교 위원회 기록

선거 관련 문서, 공식 서신, 회의 안건, 학교 자문 위원회의 의견 증거, 회의록, 출석, 권고 및 조치사항, 전년도 학교 계획안 사본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는 학교위원회의 공식 기록들은 학교의 안전한 장소에 연방법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요청 시 공개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

Article XI: AMENDMENTS 제 11 조: 수정

이 조례들은 정족수가 충족된 모든 회의에서 위원회에 대표되는 각 그룹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과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는 회의 개최 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